

법령안 입법 예고

◎ 농림수산부공고제 87-13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중요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안) 제정방향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년 3월 7일

농림수산부장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농지임대차관리법(법률 제3,888호 86.12.31)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료상한

(1) 임차료상한은 현재의 지역관례를 존중하여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2) 그 상한은 읍·면별로 농지등급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정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량에 대한 비율로, 전작물이나 특용작물의 경우는 평당금액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삼·과수등 다년생작물은 그 재배 및 수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담배·고추 등 연작 기피성 작물은 연작장애가 없는 기간까지로 하고, 정집·질병등 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차료 감면 청구

(1) 임차인은 한해·수해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함.

(2) 감면액은 감수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80% 이상 감수시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임차료감면은 수확전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함.

라. 위탁경영등의 허용

(1) 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2) 다만,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 영농실태로 보아 8km이외의 거리라도, 통작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수·인삼·약초·관상수 및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마.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1) 농지관리위원회는 당해 지역에서 3년이상 영농한 자중 이·동 총회에서 추천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함.

(2) 위원 위촉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바.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과태료 부과

(1) 1987년 10월 1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는 이 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면 이 법에 의한 서면계약으로 간주함.

(2) 임대차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신고하지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 임대계약 적용대상의 제외

분묘의 수호관리와 제수를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위토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장관(참조: 농지과장 전화: 503-72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